

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 한국 포함 중국, EU, 일본 등 주요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조사
- 기존 관세합의 수준 유지, 이익균형 및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노력

2026.3.12.(미국 현지시간 3.11.) 美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이 발표한 관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아울러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2026.3.17.일부터 4.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으며, 정부는 동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4-203-5650)
		담당자	서기관	김태우 (kimtw87@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jmp1994@motie.go.kr)

참고

美 무역법 301조 개요 (Sec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목적)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역국의 부당·불합리·차별적 법·정책·관행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조치 권한 부여(1974)

* 1974 무역법 제301조 내지 제309조를 일반 301조로 통칭

- (미측 조치 요건) ①무역협정이 부여하는 미국의 권리가 부인된 경우, ②무역협정을 위반하는 외국의 정책·관행, ③불공정한(unjustifiable) 외국의 정책·관행, ④불합리한(unreasonable) 외국의 정책·관행 해당시

⇒ (미측 가능조치) ①관세 양허의 정지·철회 ②위반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③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 등

* 불공정행위 중단, 미국 상업 활동 제약 해소 무역특혜 제공 의무화 등

- (조사·조치 절차) 조사 개시 → 외국 정부와 협의 → USTR 조치결정 (조사개시부터 12개월내) → 조치 시행(30일내) → 후속조치(모니터링/수정/종료)

* (조사개시) 이해당사자 청원 또는 USTR의 자발적 조사에 의해 조사 개시

* (외국정부와 협의) USTR은 조사가 개시된 날 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 외국 정부에 협의 요청

* (조치 결정) 미국의 권리가 부인 되었는지 여부와 USTR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결정

* (후속조치) 조치 이행 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 못한 경우, 추가 조치 검토 가능